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78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이수진・박홍배・송옥주

이연희・조 국・최기상

한정애 · 민형배 · 이건태

추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%로,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주와 가입자 본인이 각각 4.5%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9%를 전부 가입자가 부담함. 한편, 소득대체율은 2024년 기준 42%로, 매년 0.5%씩 낮아지게 설계되어 있어 2028년부터는 40%를 유지하게 됨.

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 인 반면, 보험료율은 낮게 설정되어 있어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바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.

한편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본인의 부담 수준이 높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그 지원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

율을 상향하는 한편,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소득대체율을 40%에서 45%로 인상함(안 제51조제1항 및 법률 제 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).
- 나.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.5%씩 인상하여 13%가 되게 함(안 제88조 및 부칙 제2조).
- 다.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 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%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함(안 제100조의4제1항).
- 라.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인상되는 연금보험료만큼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함(안 제100조의4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1천분의 1천200"을 "1천분의 1천350"으로 한다.

제88조제3항 중 "1천분의 45"를 "1천분의 65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1천분의 90"을 "1천분의 130"으로 한다.

제10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"를 "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36개월의 범위 내에서지원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, "지원수준, 지원방법"을 "지원방법"으로 한다.

다만,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3.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
- ②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

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연금보험료의 13분의 4를 지원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민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본문에 따른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7년까지"를 "2024년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0조의 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금보험료에 관한 적용례) ①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각 연도 별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 의 부담금은 각각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 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- 1. 2025년은 1만분의 450
- 2. 2026년은 1만분의 475
- 3. 2027년은 1만분의 500
- 4. 2028년은 1만분의 525
- 5. 2029년은 1만분의 550

- 6. 2030년은 1만분의 575
- 7. 2031년은 1만분의 600
- 8. 2032년은 1만분의 625
- ② 2025년부터 2032년까지 각 연도별 지역가입자, 임의가입자 및 임 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 고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.
- 1. 2025년은 1천분의 90
- 2. 2026년은 1천분의 95
- 3. 2027년은 1천분의 100
- 4. 2028년은 1천분의 105
- 5. 2029년은 1천분의 110
- 6. 2030년은 1천분의 115
- 7. 2031년은 1천분의 120
- 8. 2032년은 1천분의 125
- 제3조(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) 2026년부터 2032년 까지 각 연도별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금은 각각 제100조의 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 - 1. 2026년은 1천분의 5
 - 2. 2027년은 1천분의 10

- 3. 2028년은 1천분의 15
- 4. 2029년은 1천분의 20
- 5. 2030년은 1천분의 25
- 6. 2031년은 1천분의 30
- 7. 2032년은 1천분의 35

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
제51조(기본연금액) ①
<u>1</u> 천분의 <u>1</u>
<u>천350</u>
<u>.</u>
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88조(연금보험료의 부과・징수
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1천분의 65</u>
4

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 담하되,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 액의 <u>1천분의 90</u>으로 한다.

⑤ (생략)

제100조의4(지역가입자에 대한 전 연금보험료의 지원)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<단서 신설>

1.·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u>1천분의 130</u>
⑤ (현행과 같음)
세100조의4(지역가입자에 대한
연금보험료의 지원) ①
연금보험료의
100분의 50을 36개월의 범위
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 <후
<u>단 삭제></u> <u>다만, 제1호 및 제3</u>
호의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
수 있다.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
있지 아니할 것
②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
의 재산 및 「소득세법」 제4
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
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
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13

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,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 개정법률 부칙

제20조(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) 2008년부터 <u>2027년까</u> <u>지</u> 각 연도별 제51조제1항 본 문에 따른 기본연금액은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다음 각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1. ~ 17. (생 략)

18. 2025년은 1천분의 1천245

19. 2026년은 1천분의 1천230

20. 2027년은 1천분의 1천215

만, 국민인 지역가입자의 소	
	득
이 본문에 따른 기준 이상	<u>인</u>
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	느
바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일	上
를 지원할 수 있다.	
③ 제1항 및 제2항	
<u>지원방법</u>	
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·	부
개정법률 부칙	
제20조(기본연금액 산정에 대	한
적용례) <u>2024년</u>	<u>까</u>
<u> ম</u>]	
1. ~ 17. (현행과 같음)	